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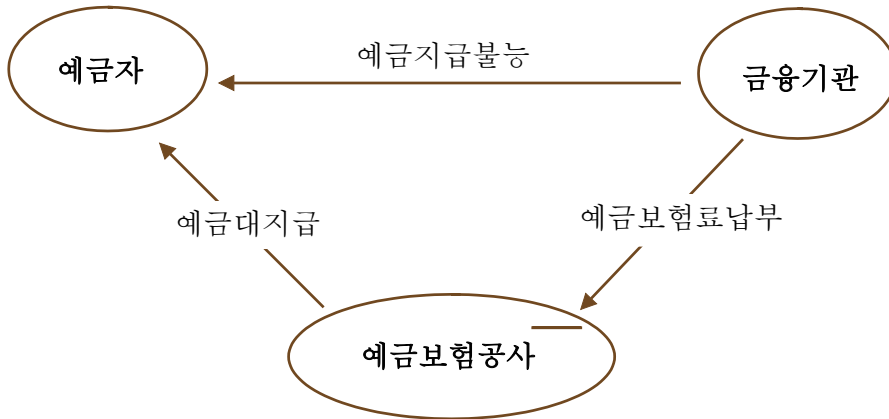
II.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및 現況

1. 우리나라의 預金者保護 裝置

가.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별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해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림 1>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protect_deposit/mean.htm)

- 예금보험제도는 保險의 原理, 즉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 大數의 法則에 의거하여 예금보험료를 각출한 후, 지급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임.⁴⁾

- 부보금융기관⁵⁾을 대신하여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금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요하며, 보험사고의 종류에는 제1종 보험사고와 제2종 보험사고가 있음.
- 제1종 보험사고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예금의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 스스로가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예금지급 업무를 중단한 경우임.
- 제2종 보험사고는 금융업의 인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사고 등에 의해서 보험사 등 금융기관 폐쇄가 확정되는 경우임.

<표 1> 예금보험사고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구 분	제1종 보험사고	제2종 보험사고
사고발생	○ 예금등의 채권의 지급정지	○ 영업인가 취소,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법원의 파산선고
가지급금 지급	○ 가지급금 지급 결정 - 가지급금 등의 지급공고 - 예금자등의 청구 - 가지급금 지급	○ 가지급금 지급절차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과정없이 바로 지급을 공고하고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금 지급결정	○ 보험금 지급결정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재경원 승인시 1개월 연기 가능) - 부보금융기관의 정상화 가능성, 합병등을 통한 구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의 지급 -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합계액에서 채무합계액을 제외한 순예금잔액	左 同

<출처>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 4) 따라서 예금보험의 존재여부 및 형태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구조 전체 금융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5)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농·축수협, 중금, 상호신용금고, 신탁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나.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現況

-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의 효시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⁶⁾임.
그후 지난 ‘80년대에 증금사 및 상호신용금고(‘83.5월), 신협협동조합(‘83.7월), 보험회사(‘89.4월)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설치·운용되어 왔으며, 은행(‘96.6월) 및 증권(‘97.4월)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되었음.

- 현재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예금보험기금은 기존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각 금융권별로 설치·운용되었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의 각종 기금들을 지난 ‘98.4월에 통폐합한 것임.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제정 : 1995.12.29)에 의거하여 ‘96.1.1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알선 등 자금지원, 정리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 및 지도감독업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징구 및 조사검사 업무 등임.⁷⁾

6) 동기금은 ‘72~’75년까지 국민은행이 관리해오다가 ‘76년이후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관리하고, ‘83. 5월에 “신용관리기금”에 포괄 승계되었음.

신용관리기금은 1982년 제2금융권 활성화대책의 추진과 함께 신용질서 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임.

7) ‘99.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업무가 추가되었음. <주 3> 참조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정시('96. 1월) 만들어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것으로, 기존의 각종 예금자보호기금이 '98.4월에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은행의 예금보호기금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었음.
- 그후 지난 '97.11월 외환 및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원리금 전액보장이 시행과 이어서 동년 12월 기존의 예금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5개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용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98. 4월 완료)하여 일원화한 것임.

<표 2> 통합이전의 금융권별 예금자보호장치 ('98. 4월 이전)

구 분	예금보험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립일	'96.6	'89.4	'83.5	'83.7	'97.4
설립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증권거래법
대상기관	국내은행, 외은지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업무기능	예금보험, 자금지원	보험금지급 보장	예금보험, 자금지원, 퇴출업무	자금지원, 예금보험	고객예탁금 지급보장
가입방식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보장한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재원조성 (출연요율)	예금평잔의 0.03%	수입보험료의 0.15%	예수금평잔의 종금: 0.12% 금고: 0.15%	예탁금평잔의 0.06%	고객예탁금 평잔의 0.15%

<출처> 김용우('98.7)의 p.8

- 현재 통합 예금보험기금이 기존의 각 금융권별 예금보호기구를 통폐합함에 따라 현재 전체 금융권중 약 1,900여개 금융기관이 부보금융기관으로 속해 있음. 한편 각 금융권별 보험기금 적립 금액은 '98.3월말 기준으로 은행 563억원, 보험 2,447억원, 종합 1,748억원, 신용금고 2,652억원, 수협 529억원 등임.⁸⁾

<표 3> 예금보험기금 제도하의 금융기관 현황 ('99.9월 기준)

구 분	국 내	국 외	기 타	소 계
은행	22	50	31*	103
증권회사	32	22	0	54
보험회사	생명보험	6	0	29
	손해보험	4	0	16
종합금융	11	0	0	11
상호신용금고	196	0	0	196
신용협동조합	1,490	0	0	1,490
합 계	1,786	82	31	1,899

(주)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소속 단위수협으로서 은행업무 인가를 받은 수협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servlet/AllList>)

- 한편 현재 '9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된 예금보험제도는 향후 2001년 부터는 보호대상예금 범위가 환원됨에 따라 예금보험료 수입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예금보험료 각출수준은 '98.4월 ~ 12월 2,183억원, '99.1월 ~ 11월 4,160억원 수준임.⁹⁾

8) 동금액은 운용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보험료적립 규모임.

9)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1999.12.16

2. 外國의 預金者保護 裝置

가. 外國의 預金保險制度 (總括)

- 세계 무역시장의 단일화 추세 및 국경없는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각국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도입이 이루어졌음.
- 특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70~'80년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은행을 중심으로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예금 지급 불능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일반화되었음.
- 금융시장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¹⁰⁾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의 경우 실제로 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기관의 대량 파산을 경험한 이후에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또는 신규로 도입하였음.¹¹⁾
 -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일부 금융기관의 부분적 파산도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전성 위협에 대한 방지, 특히 예금자보호에 대처하고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음.

10) 각국의 예금보험제도는 대부분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예금자보호장치이며, 보험회사와 같은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 제도를 두고 있음.

11) 1930년대초 대공황이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미국(1933), 1970년대 2차 금융위기 후의 영국(1982), 대형은행인 Banco Ambrosiano 파산이후의 이탈리아(1987)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표 4〉 외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시기

구 분	국가 및 도입년도
1930년대	미국('33)
1960년대	캐나다('67), 독일('66 및 '69), 핀란드('69), 필리핀('63), 노르웨이('61), 인도('61)
1970년대	일본('71), 스페인('77), 아르헨티나('79), 오스트리아('79), 네덜란드('79), 파라과이('71)
1980년대	프랑스('80), 영국('82), 터키('83), 스위스('84), 벨기에('85), 콜롬비아('85), 베네주엘라('85), 칠레('86), 덴마크('87), 이탈리아('87), 브라질('89), 아일랜드('89), 터키('83)

〈출처〉 정운찬 (1999), pp.208

- 이와같은 각국의 예금보험제도의 경우에 대부분 별도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영주체는 대부분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금융정책당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
- 예금보험제도에의 가입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자율가입형과 강제가입형이 있음. 현재 각국의 운용형태에 따르면, 강제가입형 제도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음.¹²⁾
 - 강제가입형 :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
 - 자율가입형 :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스위스 등

12) 미국의 경우 국책은행은 강제가입이지만, 나머지 연방준비위원회 회원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의 경우는 임의가입임.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 및 저축기관이 동제도에 가입되어 있음.

- 한편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주요 업무는 각 국마다 큰 차이는 없으나, 크게 분류해 보면 예금보험업무 이외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정리업무 등이 대부분임.
- 예금보험제도상의 예금에 대한 보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호대상 예금중 예금액의 일정한도액 또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부분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단, 노르웨이 등 소수국가만이 전액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표 5> 외국의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구 분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자국화폐 기준	\$10만	¥1,000만	C\$60,000	£ 20,000, 예금의 90%

(주) 1인당 기준 (중복계좌 포함)

<출처>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각국 예금보험공사의 internet home page) 자료

- 예금보험제도의 기금 조성중 부보금융기관의 출연방법은 사전에 보험료를 각출하여 적립하는 사전각출제와 금융기관 파산시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분담·각출하는 사후각출제 방식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료의 사전각출제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많으며¹³⁾, 일부 국가가 사후각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즉, 사전각출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등 대부

13) 사전각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중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부족, 또는 투입 공적자금의 회수 등의 목적에 따라서 사후에 별도로 각출금을 분담시킨 사례가 있음. 한편 영국의 경우 사전각출방식과 사후각출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분의 국가이며, 사후각출제의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속함.

- 한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산출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정보험료율(flat-rate premium system)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¹⁴⁾ 및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차등보험료율(risk-rate premium system)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¹⁵⁾
-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각국의 개별적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단,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 감독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일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예금보험제도 운용 및 기능상의 세계적인 통일화 추세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감독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이상 외국의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각국은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과 그로 인한 계약자보호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들 국가중 일부 국가의 예금자보호장치를 실제 예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음.

14)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FDIC)의 관련 법규인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서 지난 1991년 개정논의시 차등보험료율제도(risk-rate premium system)의 도입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93년에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되었음.

15)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약 50여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 대만, 멕시코 등이 도입 준비중임.

Gillian Garcia, "Comparative Analysis of Established Deposit Insurance System", FDIC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Paper, 1998

나. 主要國의 預金保險制度¹⁶⁾

1) 미 국

- 지난 1930년대초 대공황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히 금융위기사 급격한 예금인출(bank-run) 사태 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systematic failure)을 방지하기 도입되었음.

- 현재 대표적인 예금자보호장치는 금융기관별로 볼 때,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¹⁷⁾가 있음. 그리고 이외에 지난 1970년에 설립되어 신용조합(Credit Union)의 예금보험기구인 전국신용조합협회(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가 각각 예금보험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에는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와 저축조합보험기금(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등 두가지의 보험기금이 있음.
 - 전국신용조합협회(NCUA : 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 산하에는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NCUAIF : Nation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이 있음.

16) 각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사항은 최장봉외(1996. 4), 그리고 정운찬(1999)을 참조하였으며, 최신 자료는 각국의 예금보험공사 즉, 미국(FDIC), 일본(JDIC), 캐나다(CDIC)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음.

17) 1933년에 은행을 대상으로한 예금보험(FDIC)이 도입된 후, 1934년 저축대부조합을 대상으로한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도산으로 FSLIC가 지급불능사태에 이르자, 1989년 FDIC에서 S&L의 예금보험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음.

- FDIC산하의 예금보험에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저축대부조합 등이 부보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음. 이중 국법은행은 강제가입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원하는 경우 FDIC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이 됨.¹⁸⁾
- 예금보험 대상예금은 당좌 및 저축예금, CD, 신탁자금 등이 포함되지만, 금융채와 해외지점 예금은 제외됨. 단, 예금보험 지급 한도액은 중복계좌를 포함하여 1인당 \$10만로 한정되어 있음.¹⁹⁾
-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93년부터 금융기관의 위험도(risk-rate) 및 자본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차등보험료율제(risk-rate premium system)를 채택하고 있음.
 - 위험도는 감독당국의 경영평가(CAMEL제도)²⁰⁾ 등급에 근거하여 3단계로 구분하고, 자본상황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조합하여 총9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 FDIC 산하의 BIF와 SAIF의 차등보험료율의 bp(basis point)는 0~27bp로서, '98년말 기준으로 평균bp수준은 BIF가 0.1bp이고, SAIF는 0.25bp임.²¹⁾

18) '98년말 기준으로 은행보험기금(BIF)의 경우 약 1만 1,000개,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에는 약 1,430여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약 95%이상 수준임.

19) 단,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예: 대출금)를 차감한 순예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20) CAMEL은 금융기관 경영평가방법으로 주요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임.

21) FDIC의 보험료율은 0.04%~0.31% 임. 다만, SAIF산하의 일부 저축기관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0.23%~0.31%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과거 저축대부조합의 대량파산으로 SAIF의 재원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임.

- FDIC의 적정적립액 한도는 예금보험 대상예금 잔액의 비율 1.25% (target Designated Reserve Ratio)로 되어 있음. 현재 '98년말 기준으로 각 보험기금의 잔액과 대상예금잔액의 비율은 BIF의 경우 1.38%, SAIF의 경우는 1.25%임.²²⁾

<표 6> FDIC의 차등보험료율 및 등급분포 현황 ('98년말 기준)

은행보험기금(BIF)			
자본등급*	감독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	0%	0.03%	0.17%
기관수(비중)	8,602 (95.0%)	261 (2.9%)	36 (0.4%)
2등급	0.03%	0.10%	0.24%
기관수(비중)	111 (1.2%)	14 (0.2%)	14 (0.1%)
3등급	0.10%	0.24%	0.27%
기관수(비중)	5 (0.0%)	2 (0.0%)	11 (0.1%)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자본등급*	감독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	0%	0.03%	0.17%
기관수(비중)	1,322 (92.4%)	64 (4.5%)	14 (1.0%)
2등급	0.03%	0.10%	0.24%
기관수(비중)	17 (1.2%)	4 (0.3%)	4 (0.3%)
3등급	0.10%	0.24%	0.27%
기관수(비중)	2 (0.1%)	1 (0.1%)	2 (0.1%)

(주) * 자본등급 1 : Well capitalized, 자본등급 2 : Adequately capitalized, 자본등급 3 : Under capitalized

** A : CAMELS 1, 2등급, B : CAMELS 3등급, C : CAMELS 4, 5등급

<출처> <http://www.fdic.gov/deposit/insurance/risk>

22) '98. 12월말 기준으로 BIF의 대상예금 잔액 및 적립액은 각각 2조 1,413억\$, 296억\$이며, SAIF의 대상예금잔액 및 적립액은 각각 7,089억\$ 및 89억\$임.

2) 캐나다

- 금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및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지난 1967년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하여 캐나다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설치되었음.²³⁾

- CDIC 산하의 예금보험에는 은행, 신탁회사(trust company), 대출회사(loan company) 등이 포함되며, 일부 州政府 금융기관의 경우 CDIC의 승인허가서 가입됨.²⁴⁾ 반면에 보험회사, 신용조합, caisses populaires, 투자딜러(investment dealers)는 비회원임.

- CDIC 보호대상의 예금으로는 일단 캐나다내에 자국화폐(C\$)로 5년이하 기간 예치되어야 함.
 - 저축 및 수표구좌, 투자보증부계약(GICs) 등의 정기예금 및 대출회사발행 무상환사채(debenture), money order, drafts 등이 적용됨. 반면에 외화예금, 5년이상 정기예금, 정부채권, 은행발행 무상환사채, 주식, 뮤추얼펀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금보험 보전 한도금액은 중복계좌를 포함하여 예금자 1인당 C\$60,000임. 단, 공동명의 예금자(joint depositor), 신탁예탁자는 별도 예금자로 하며, 퇴직관련 예금은 다른 예금으로 취급됨.

- CDIC의 예금보험대상 예수금은 '99.10월 기준으로 약 C\$3,170억이며, 반면에 CDIC는 1982년에 첫 흑자를 달성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99.3월말 기준으로 C\$2,700만의 흑자를 달성하였음.

23) 이외에 Quebec주의 정부관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퀘벡주예금보험위원회(Quebec Deposit Insurance Board)가 있음

24) 1999년 7월 현재 CDIC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12개임.

- CDIC 산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1995년까지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도 및 예수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6년 CDIC 관련 법규개정시 가입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법규가 통과되었음.
 - 기존의 경우 정률 보험료율제 적용시기에는 일률적으로 보험대상 예수금잔액의 1%의 1/6 (0.16667%)를 적용하였음.

- 현재는 '99. 3월에 도입된 차등보험료제에 의거, 산하 금융기관의 미래 손실위험도와 예수금적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4단계로 보험료율을 차별화하였음. 차등보험료율 기준의 분류는 자본적정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감독기관 평가등급 등에 근거함.

<표 7> CDIC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구 분	보험료율 (예금보험대상 예수금 잔액 기준)
1 등급	1%의 1/24 또는 0.0417%
2 등급	1%의 1/12 또는 0.0833%
3 등급	1%의 1/6 또는 0.1667%
4 등급	1%의 1/3 또는 0.3333%

<출처> <http://www.cdic.ca/english/library/19990318e.htm>

- CDIC는 계속되는 흑자유지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약 75%의 보험료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1998/1999년 예금보험료 규모는 약C\$ 5억 1,500만, 1999/2000년에는 약 C\$1억 2,500만으로 추정되고 있음.

3) 일본

- '70년대 들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 등을 위한 금융자율화가 급진전되면서 예금자보호 필요성 및 신용질서를 위하여 지난 1971년에 특별법인 형태로 일본예금보험기구(Jap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 설립되었음.²⁵⁾
- JDIC 산하의 예금보험에는 은행²⁶⁾,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 등이 포함되며, 반면에 우체국, 정부계열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지점,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²⁷⁾
 - JDIC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중 증권, 보험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기금²⁸⁾이 운용되고 있음.
- JDIC 보호대상 예금으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저축예금, 정기에·적금, 별단예금, 원금보존형 금전신탁(대부신탁 포함)등이며, 단 외화예금 및 양도성예금(CD)는 적용되지 않음.
- 예금보험 보전 한도금액은 원금기준으로 1인당 1천만엔임.
 - 그러나 지난 '98년 금융재생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대상 예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01.3월말까지 1천만엔을 초과하는 원리금의 대해서도 전액 보상됨.

25) '71년 설립당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와 관련된 업무범위가 지난 '96년의 주전(住專)처리법의 제정, '98년의 금융재생관련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대폭 확충되었음.

26) 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됨.

27) 이외에 농수산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1973년에 설립된 농수산협동조합 예금보험기구가 있음.

28) 일본투자자보호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이 있음.

- JDIC 산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단일 보험료제도(일반보험료율)였음. 그러나 지난 '96.6월 법개정시 2001.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특별보험료율²⁹⁾을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일반보험료율은 지난 '96년에 개정된 요율로서 각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예금보호대상 예수금 잔액의 0.048%³⁰⁾를 적용하고 있음.
 - 특별보험료율은 일반보험료율과 동일한 형태로 각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되 보험료율은 0.036% 임.

- 한편 현재 JDIC의 자본금 및 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은 '99. 10월 현재 54.55억엔이며, 이중 一般計定이 4.55억엔, 住專計定이 50억엔임.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 등의 재원인 책임준비금은 지난 '95.3월말까지는 약 8,760억엔 이었으나, 그후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99. 3월말 현재 △1조 1,876억임.

- JDIC의 준비금 부족액은 보험료수입외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자금차입 등으로 보전되어짐.
 - 보험금지급, 예금등채권매입, 자금지원등을 위한 경우 일본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한도 2조엔)이 가능함.
 - 특별자금지원의 경우 일본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한도 10조엔) 및 국채발행(한도 7조엔) 등이 가능함.
 - 이외 추가적인 자금필요시 예금보험기구채권 발행도 가능함.

29) 특별보험료는 '86.6월 법개정시 향후 200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등 채권의 특별매입, 특별자금지원, 특별업무 시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법 시행령에서 정함.

30) 개정전의 예금보험료의 보험료율은 0.012%임.